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2

제출년월일 : 1994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사유

- ㅇ 충청북도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감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,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토지 합병으로 번지를 변경함.
- ㅇ 증평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활동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증평도서관을 설립함.
- ㅇ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(법률 제4,774호, '94. 8. 3.)에 의거 해당 시에 소재한 도서관의 주소를 변경함.

□ 주요골자

- ㅇ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,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하며,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8조제1항).
- ㅇ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번지를 "613-8"에서 "38-6"으로 변경함 (안 별표1).
- ㅇ 증평도서관을 신설함 (안 별표1).
- ㅇ 중원도서관의 위치중 "중원군"을 "충주시"로 변경함 (안 별표1).
- ㅇ 부칙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
  -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 [별표 1] 위치란의 "중원군"을 "충주시"로, "제천군"을 "제천시"로 함 (부칙안 제2조).

□ 개정근거

- ㅇ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 (교육기관의 설치)
- ㅇ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 (설치 승인)
- ㅇ 교육부 교육기관 설치 승인 (지기 12200-887, '94. 11. 3.)
- ㅇ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(공공도서관의 설립 · 육성등)
- ㅇ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(법률 제4, 774호)

□ 조 례 안 : 덧붙임

□ 참고사항

- ㅇ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ㅇ 교육부 증평도서관 설치승인 공문서 사본 : 덧붙임
- ㅇ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 · 의결 공문서 사본 : 덧붙임
- ㅇ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: 덧붙임
- ㅇ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휴관일)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,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. 단,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[별표 1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[별표1] 명칭 및 위치의 중원학생야영장난중 "중원군"을 "충주시"로 하고, 제천학생야영장난중 "제천군"을 "제천시"로 한다.